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2
----------	------

발의연월일 : 2021. 11. 22.

발의의원 : 김은영 의원, 하중환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개정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
 - 제1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제49조
 - 제2조 : 법 제41조 → 제49조
 - 제6조 : 법 제27조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법 제27조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1조”를 “제49조”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9조 ----- ----- -----.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 3. (생략)	제2조(부과대상) ----- ----- ----- -----제49조-----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 6 조 (이 의 제 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 ----- -----.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달성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1.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1부.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 통지서)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 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달 성 군 수 인 년 월 일		

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		

영 수 필 통 지 서
(군청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		
달성군수 귀하		

영 수 필 통 지 서
(개인 통지서)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성 명		
납 부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일자인		
취급자인		

【별지 제5호 서식】

달 성 군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합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제 기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고 지 일 자		⑤과 태 료 금 액	
	⑥부 과 기 관		⑦이 의 제 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달 성 군 수 (인)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2021.1.12., 전부개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21.1.1.)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